

서울특별시 양재 R&CD 특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3
------	------

2017. 4. 2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7.4.20)상정, 제안설명,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1. 제안이유

가. 양재지구는 자생적 대·중소기업의 R&D 시설 집적지로 광역 교통의 요충지이며 대규모 저개발 가용 부지 등으로 새로운 혁신거점으로서의 공간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나. 양재지역 R&D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서초구·강남구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할 계획임

다. 규제특례와 특화사업 추진으로 연구공간 확보,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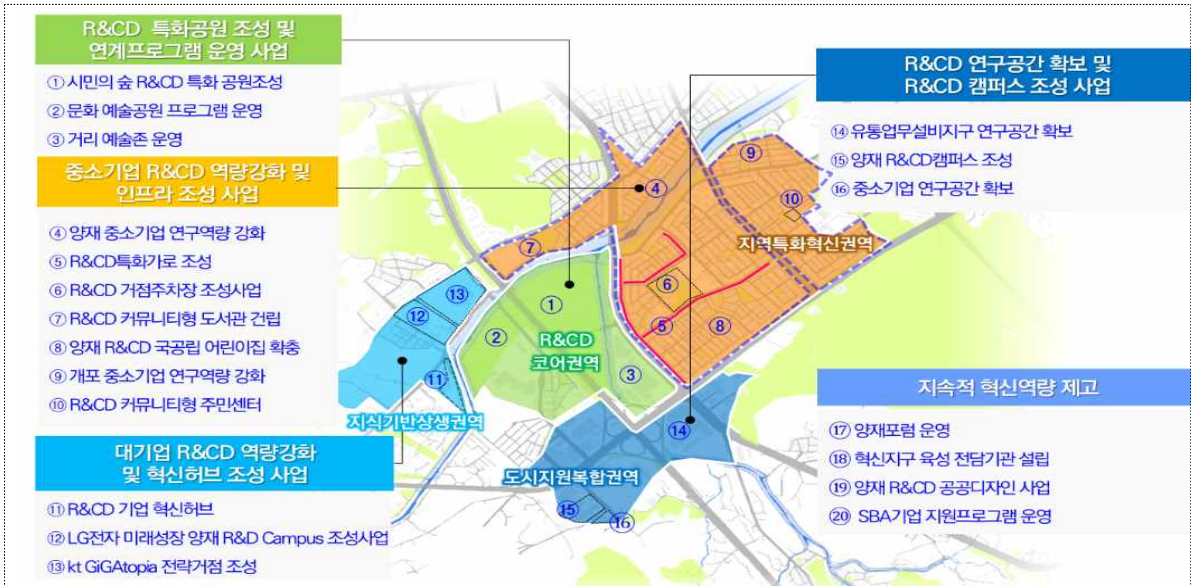
라. 추진경위

- 양재·우면 R&D 지역발전특구 지정 타당성 연구('14.2, 서초구)
- 양재 지식허브 조성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15.12, 서초구)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 용역('16.7. ~ 서초·강남구)
- 『양재 R&CD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등의 공고('17.2.23~3.16, 서울시·서초구·강남구 공동 공고)
- 특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17.3.16)

2. 주요내용

가. 특구계획(안) 개요 (명칭 : 양재 R&CD 특구)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강남구 개포 4동 일대
- 면 적 : 약 378만 m^2 (서초구 330만 m^2 , 강남구 48만 m^2)
- 신 청 :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공동 신청 (중소기업청 지정)
- 권역별 특화사업계획



권역	특화사업	특화사업 내용	특화사업자
R&CD 코어권역	R&CD 특화공원	① R&CD 특화공원 조성 ② 문화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③ 거리예술존 운영	서울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지역특화 혁신권역	중소기업 역량강화	④ 양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기반조성 ⑤ R&CD 특화가로 조성 ⑥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⑦ R&CD 커뮤니티형 도서관 건립 ⑧ 양재 R&CD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⑨ 개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기반조성 ⑩ 개포 R&CD 커뮤니티형 주민센터 건립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강남구 강남구
지식기반 상생	대기업 역량강화 혁신허브 조성	⑪ 스타트업&중소기업 혁신허브 ⑫ LG 연구기능 강화 ⑬ KT 연구기능 강화	서울시 LG KT
도시지원 복합권역	연구공간 확보 R&D 캠퍼스 조성	⑭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공간 확보 ⑮ 양재 R&D 캠퍼스 조성 ⑯ 중소기업 연구공간 확보(KCTC) ⑰ 양재포럼 운영 ⑱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전담기관 설립 ⑲ 양재 R&CD 공공디자인 사업 ⑳ SBA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초강남구 서울시 서초구 SBA

나. 특구 지정 효과

○ 세부사업에 대한 7개 규제특례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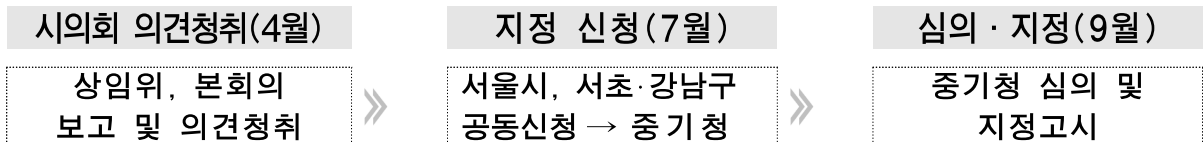
세부사업	규제특례
시민의 숲 R&CD 특화 공원 조성	·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R&CD 연계 시민의 숲,	·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문화 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거리예술존 운영	◦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양재동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R&CD특화가로 조성	◦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양재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포동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LG전자 미래성장 양재 R&D Campus 조성사업	◦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KT GIG Atopia 전략거점 조성	◦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다. 특화 사업자

- 신청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강남구청
- 민간 사업자 : 서울산업진흥원, LG, KT
- ※ 민간 사업자 추가 발굴로 특구 활성화 도모

라. 추진 일정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와 서초구 및 강남구가 양재 R&CD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전에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것임.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과 현황

-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함.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다수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 바가 있음.
- 이에 따라 특구 제도는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의 재정지원 없이 규제 완화를 통하여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정책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열

거하고 있는 규제특례 중 필요한 내용을 특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특구 지정시에 해당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특구의 지정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세제 지원은 없지만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토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지역특구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지정을 위하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특구지정 절차는 붙임자료 1 참조).
- 한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정된 특구가 현재는 전국적으로 184개(향토자원유통 90개, 관광레저스포츠 44개, 교육 29, 산업연구 17개, 의료복지 4개)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 10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양재 R&CD 특구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최초의 사례에 해당함.

<서울시의 특구지정 현황>

구분	특구명칭 (유형)	위 치 (면적)	지정일	사 업 내 용
동대문구	약령시 한방산업 (향토자원·유통물류)	제기동일원 (280,688㎡)	'05.6.28	○한방관광 인프라 구축 ○한약재 유통개선 사업

노원구	국제화교육 (교육)	월계동일원 (432,742㎡)	'07.9.28	○외국어교육 심층특화사업 ○학교 환경개선사업
중구	영어교육 (교육)	신당동일원 (401,975㎡)	'07.9.28	○학교영어교육강화사업 ○영어교육 통합시스템 구축
	해피메디컬투어리즘 (의료·복지)	총무로일대 (536,897㎡)	'14.3.28	○의료관광기반 조성사업 ○의료관광 마케팅사업
강남구	청담·압구정패션 (관광레포츠)	청담, 압구정 (963,800㎡)	'08.7.25	○선데이 패션, 뷰티마켓 ○패션지원센터 건립사업
관악구	Edu-Valley (교육)	신원동일원 (38,223㎡)	'10.11.18	○관악 교육문화센터 운영 ○국제화 교육 강화사업
은평구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한옥마을 및 북한산성마을 (639,155㎡)	'15.4.24	○전통문화특화사업 ○북한산관광특화사업
성동구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 (교육)	행당동 일대 (126,438㎡)	'15.11.27	○전통문화 재창조 ○휴(休)문화의 글로벌 명소화
강서구	미라클메디특구 (의료·복지)	강서로, 공향대로 일대 (1,432,326㎡)	'15.11.27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종랑구	역사문화교육특구 (교육)	망우동일원 (51,108.6㎡)	'16.7.18	○역사교육 테마파크 조성사업 ○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

다. 양재 R&CD 특구 계획의 타당성

- 양재 R&CD 특구 계획(이하 '특구 계획')에 따르면 R&CD란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기존의 개념에 핵심기술의 연계와 융합(Connection)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Company), 지역사회교류(Community), 생태문화(Culture) 개념을 도입하여 도심복합형 R&CD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양재 R&CD 특구의 대상지는 서초구의 양재동·우면동과 강남구의 개포4동으로 서울의 남단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도심과 수도권권을 연결하는 가교 지역이면서 소비시장과 제조공장을 배후지로 두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집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많은 연구소들로 인하여 자생적 R&D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식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 16년 1월 기준으로 양재동과 우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총 313개소(대기업 부설연구소 19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94개)로 파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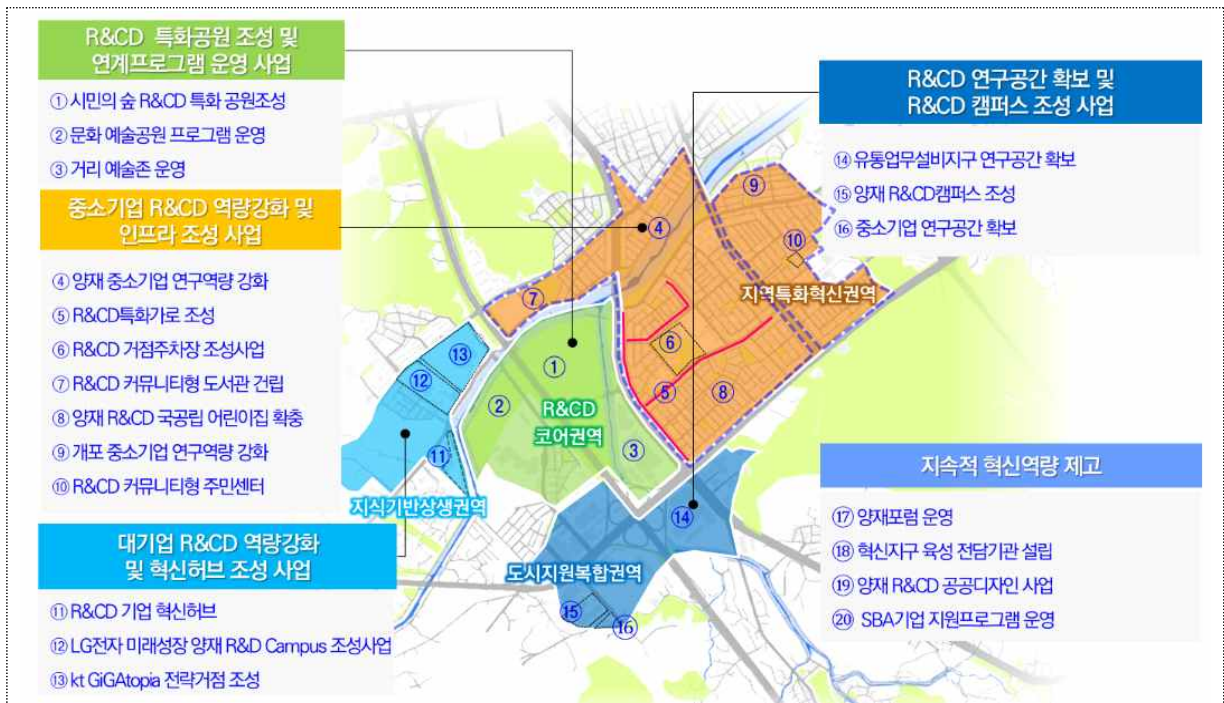
<특구 지역 내의 연구시설 현황>



- 반면에 특구 대상 지역은 문화시설의 부족, 교통체증 등 열악한 인프라와 교류와 협력의 부족으로 R&D기관의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간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서울시는 양재·우면·개포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 규제완화와 특화사업의 추진으로 양재 R&CD 특구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특구 계획에 따르면, 특구를 4개의 특성지역으로 구분하고(지역기반 상생권역, 도시지원복합권역, 지역특화혁신권역, R&CD 코어권역), 지역특성에 맞는 20개의 특화사업을 서울시와 서초구·강남구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서울산업진흥원·LG·KT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권역별 특화사업 현황>



- 또한 R&CD 특구 조성을 위하여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약 4,752억 6천만원이며 이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가 3,975억원 (LG 2,655억원·KT 1,32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3.6%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는 17년에서 21년까지 총 337억 9천만원(‘17년 126억 3천만원, ‘18년 63억 1천만원, ‘19년 123억 4천만원, ‘20년 21억원, ‘21년 1억5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임.

<특화사업비별 지출 계획>

특화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특화사업자
		계	시비	구비	민자	
총 계		475,268.9	33,793.9	43,975.0	397,500.0	
R&CD 특화공원	① R&CD 특화공원 조성	6,514.0	6,514.0	-	-	서울시
	② 문화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240.0	240.0	-	-	서울시
	③ 거리에예술존 운영	62.0	62.0	-	-	서울시
중소기업 R&CD 역량강화	④ 양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기반조성	-	-	-	-	서초구
	⑤ R&CD 특화가로 조성	1,500.0	-	1,500.0	-	서초구
	⑥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10,490.0	-	10,490.0	-	서초구
	⑦ R&CD 커뮤니티형 도서관 건립	17,482.0	-	17,482.0	-	서초구
	⑧ 양재 R&CD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420.0	5,000.0	3,420.0	-	서초구
	⑨ 개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기반조성	240.0	90.0	150.0	-	강남구
	⑩ 개포 R&CD 커뮤니티형 주민센터 건립	10,333.0	-	10,333.0	-	강남구
대기업 R&CD 역량강화	⑪ R&CD 기업 혁신허브 조성	10,735.0	10,735.0	-	-	서울시
	⑫ LG 미래성장 양재 R&D Campus 조성	265,500.0	-	-	265,500.0	LG
	⑬ kt GIGAtopia 전략거점 조성	132,000.0	-	-	132,000.0	KT
연구공간 확보 및 R&CD 캠퍼스 조성	⑭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공간 확보	-	-	-	-	서울시/서초구
	⑮ 양재 R&CD 캠퍼스 조성	400.0	400.0	-	-	서울시
	⑯ 중소기업 연구공간 조성(KCTC)	-	-	-	-	서울시/서초구
지속적 혁신역량 제고	⑰ 양재포럼운영	700.0	500.0	200.0	-	서울시/서초구 /강남구
	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전담기관 설립	452.9	452.9	-	-	서울시
	⑲ 양재 R&CD 공공디자인 사업	200.0	-	200.0	-	서초구
	⑳ SBA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10,000.0	10,000.0	-	-	서울시

- 아울러, 특구 계획에는 9개의 특화사업에 ‘지역특구법’상 규정된 7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투자와 특구의 특성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특구계획상의 포함된 규제특례>

규제특례	필요성	적용범위	특화사업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 연구자의 고용 발급절차 간소화	외국인 채용	⑫ LG 연구기능 강화 ⑬ KT 연구기능 강화 ④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기반조성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축제나 문화행사시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 필요	특화가로, 30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⑤ R&CD특화가로 조성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이미지에 부합하는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특구상징 옥외 광고물 설치	⑤ R&CD특화가로 조성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R&D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공간 확보 및 연구시설 유치 확대	양재2동 및 주거지, 개포4동	④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기반조성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특화가로	⑤ R&CD특화가로 조성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원조성 및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설치	양재시민의숲 및 문화공원	⑥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③ 거리예술존 운영 ① R&CD특화공원 조성 ② 문화 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출현에 대한 우선 심사	특화사업자	⑫ LG 연구기능 강화 ⑬ KT 연구기능 강화

- 한편, 서울시는 17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서초구·강남구와 공동으로 특구 계획을 공고하였고 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3월 16일에 개최하였음.
 - 400여 명의 주민과 기업인이 참석하였으며 용적률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서초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공청회에서 추가설명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완화와 특구특화사업의 추진은 양재 R&CD 특구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특구 지역의 R&D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특구 지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반면에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확대 등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형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재 R&CD 특구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강남·북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반한다는 측면도 있음.
- 시의회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재원조달방법’과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등 ‘지역특화법’¹⁾에서 특구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이 누락되고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특구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구 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실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 용역(16년 7월 발주, 17년 2월 완료)에 기반하고 있으나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이 미반영되고 용역보고서의 특화사업 관한 내용들이 추상적이거나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점검이 필요함.

1)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6. 재원조달방법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비록 초안이기는 하나 용역보고서의 특구 계획안 일부를 살펴보면,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전담기관 설립(⑩)’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며 ‘R&CD 기업 혁신 허브 조성(⑪)’, ‘SBA 기업지원프로그램(⑫)’의 경우 추정사업비가 부정확함.
 -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전담기관 설립(⑩)’은 현재 추진중인 서울과학기술진흥원 재단 타당성 용역 5,290만원에 산출기준없이 연간 운영비를 1억원으로 책정하고 4년간 운영비를 합산하여 총사업비를 4억5,290만원으로 추정하였음.
 -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R&CD 기업 혁신 허브 조성(⑪)’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약 25억원이 되나 용역보고서에는 연간 운영비가 20억원이며 2021년의 운영비가 빠져있음.
 - ‘SBA 기업지원프로그램(⑫)’의 경우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특구 지역에 연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를 100억원(17년 사업비가 20억원, 18년 40억원, 19년 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2020년·2021년의 사업비가 누락되어 있으며 특구지역만을 대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비 추정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음.

- 또한 LG, KT와 함께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사업비가 빠져 있어 용역보고서를 통하여 산출된 사업비(총 사업비 4,752억 6천8백만원, 서울시의 사업비 337억 9천3백만원)의 정확한 추계와 KOTRA의 특화사업 등이 특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서초구의회에 제출된 ‘양재 R&CD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KOTRA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총 사업비가 5,012억원

으로 서울시와 약 260억원의 차이를 보임.

- 한편, 특구 지정 후에 특화사업의 실시와 규제완화로 특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어 사무공간을 임차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요구됨.
 - 특구계획에 따르면 주민과의 자율적인 상생협약과 MOU 체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조례 제정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또한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민간투자 유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현재 계획대로 LG와 KT의 투자가 최종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아울러 ‘지역특구법’에 따르면 특구 지정 후에 특구의 실질적인 관할권이 서초구청장과 강남구청장에게 귀속되므로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를 신청한 경우 특구의 관할을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는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구 계획에 의하면 특구의 구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9,730억원, 고용효과는 28,043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기대되며 양재 R&CD 특구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서울시의 혁신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구의

지정은 의미가 있음.

- 다만, 양재 R&CD 특구 사업이 서울시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특구의 신청과 지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청에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특구 계획에는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청취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내용과 사업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양재 R&CD 특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733
----------	------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양재지구는 자생적 대·중소기업의 R&D 시설 집적지로 광역 교통의 요충지이며 대규모 저개발 가용 부지 등으로 새로운 혁신거점으로서의 공간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나. 양재지역 R&D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서초구·강남구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할 계획임
- 다. 규제특례와 특화사업 추진으로 연구공간 확보,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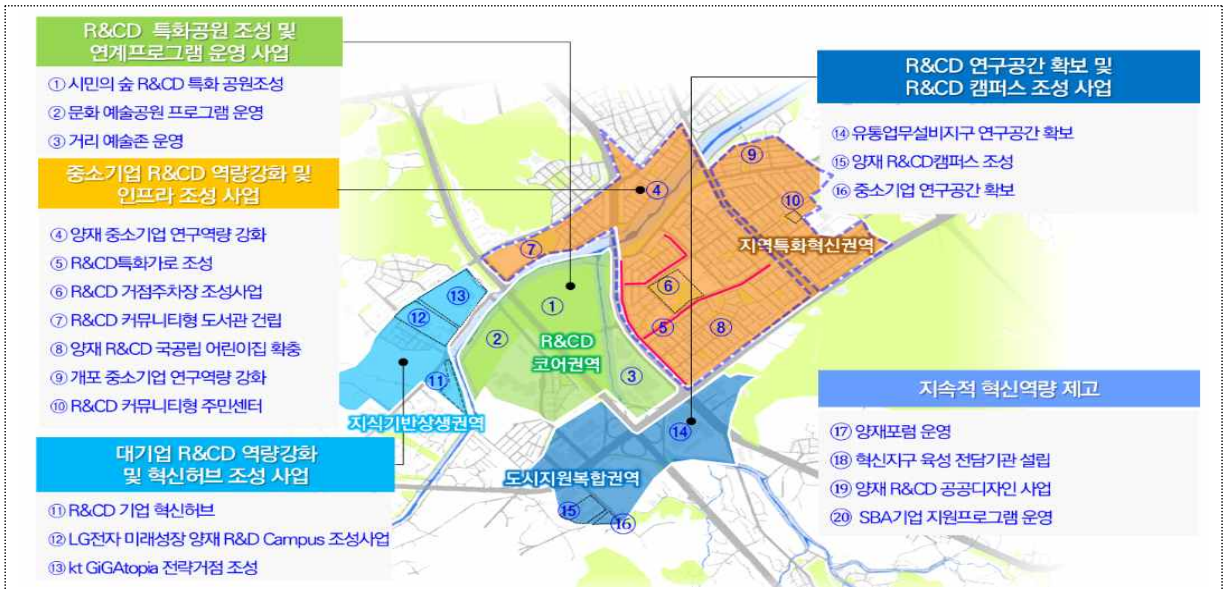
라. 추진경위

- 양재·우면 R&D 지역발전특구 지정 타당성 연구('14.2, 서초구)
- 양재 지식허브 조성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15.12, 서초구)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 용역('16.7.~ 서초·강남구)
- 『양재 R&CD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등의 공고('17.2.23~3.16, 서울시·서초구·강남구 공동 공고)
- 특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17.3.16)

2. 주요내용

가. 특구계획(안) 개요 (명칭 : 양재 R&CD 특구)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강남구 개포 4동 일대
- 면 적 : 약 378만 m^2 (서초구 330만 m^2 , 강남구 48만 m^2)
- 신 청 :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공동 신청 (중소기업청 지정)
- 권역별 특화사업계획



권역	특화사업	특화사업 내용	특화사업자
R&CD 코어권역	R&CD 특화공원	① R&CD 특화공원 조성 ② 문화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③ 거리에술존 운영	서울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지역특화 혁신권역	중소기업 역량강화	④ 양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기반조성 ⑤ R&CD 특화가로 조성 ⑥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⑦ R&CD 커뮤니티형 도서관 건립 ⑧ 양재 R&CD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⑨ 개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기반조성 ⑩ 개포 R&CD 커뮤니티형 주민센터 건립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강남구 강남구
지식기반 상생	대기업 역량강화 혁신허브 조성	⑪ 스타트업&중소기업 혁신허브 ⑫ LG 연구기능 강화 ⑬ KT 연구기능 강화	서울시 LG KT
도시지원 복합권역	연구공간 확보 R&D 캠퍼스 조성	⑭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공간 확보 ⑮ 양재 R&D 캠퍼스 조성 ⑯ 중소기업 연구공간 확보(KCTC) ⑰ 양재포럼 운영 ⑱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전담기관 설립 ⑲ 양재 R&CD 공공디자인 사업 ⑳ SBA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초강남구 서울시 서초구 SBA

나. 특구 지정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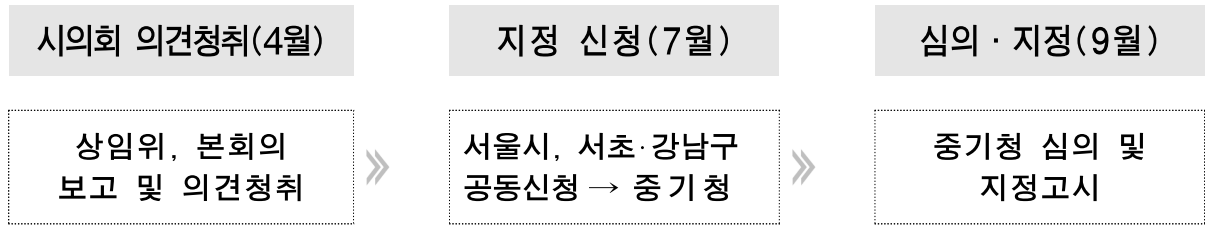
○ 세부사업에 대한 7개 규제특례법 적용

세부사업	규제특례
시민의 숲 R&CD특화 공원조성	◦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R&CD연계 시민의 숲, 문화 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거리예술존 운영	◦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양재동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R&CD특화가로 조성	◦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양재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포동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LG전자 미래성장 양재 R&D Campus 조성사업	◦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KT GIG Atopia 전략거점 조성	◦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다. 특화 사업자

- 신청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강남구청
- 민간 사업자 : 서울산업진흥원, LG, KT
- ※ 민간 사업자 추가 발굴로 특구 활성화 도모

라. 추진 일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투자계획(안)
 - 총 28,175백만원 : 시비(12,640백만원), 구비(15,535백만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장윤모 (☎ 2133-5213)